

등록번호	교육체육과-7988
등록일자	2015.7.10.
결재일자	2015.7.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교육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조상균	박수돈	장형태	전결 07/14 박희균
협 조	검진팀장	강정원	

2015년 여름철 수영장 점검 계획



행정관리국
교육체육과

2015년 여름철 수영장 점검 계획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하여 관내 수영장 시설·설비의 적절한 유지 관리와 안전·위생 기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영장 이용에 대한 안전사고 및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3조
- 2015년도 여름철 수영장 점검 계획[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8041(2015.06.25.)]

추진방향

- 여름철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
 - 수영장의 시설기준 준수
 - 시설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준수
 - 전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수영장 현황

(2015년도 6. 30.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공공	민간		
			소계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합계	15	3	12	8	4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15. 7. 13. ~ 2015. 8. 31

점검대상 : 15개 수영장(실내 13, 실외,실외 겸업 2)

○ 실내 수영장 : 13개소

- (주)호텔롯데헬스센터, (주)소피텔엠베서더휘트니스클럽, 신세계조선CAC클럽, (주)씨디엘호텔코리아, (주)프라자휘트니스클럽, (주)디에스디엘플레이저 플레이스호텔, (주)한국스포터, 서울스포츠, 덕수초등학교, 서울YWCA, 회현 체육센터, 충무아트홀, 청구문화스포츠센터

○ 실외 · 실외 수영장 : 2개소

- (주)호텔신라헬스클럽, (주)Bantan Tree 호텔 수영장

주요 점검사항

- 부상자 · 환자 구호를 위한 구급약품 구비여부
- 수심 0.9m 이상 2.7m 이하 유지 여부
- 수영장 주변 통로 등 바닥면이 미끄럽지 않은 자재 사용 여부
-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 설치 여부(실외 수영장)
-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 수영장 수질검사

점검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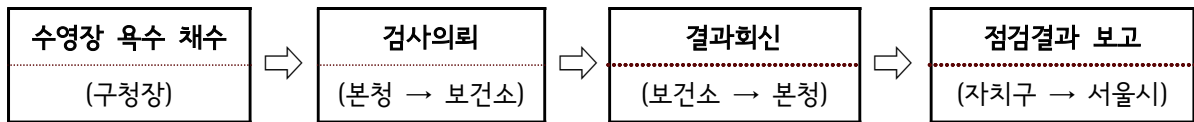
- 점검반 편성 운영
 - 2인 1조, 주 1회 이상 순찰
 - 수영장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및 취약지 등 중점 점검

□ 수영장 수질검사

○ 검사방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수질 검사 방식 준용하여 채수 후 검사의뢰(보건소)

○ 수질검사

- 검사주기 : 주1회 이상(단, 신설된 비소, 수은, 알루미늄은 연1회 검사)
- 검사절차



- 수질검사 측정항목 및 기준

측정 항목	유리잔류 염소	수소이온 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신설)	수은 (신설)	알루미늄 (신설)
기준	0.4~1.0mg/ℓ	5.8~8.6	1.5NTU 이하	12mg/ℓ 이하	양성2개 이하	0.05 mg/ℓ 이하	0.007 mg/ℓ 이하	0.5 mg/ℓ 이하

※ 수영조 욕수 채수 및 운반요령 참고<붙임 1>

□ 점검 후 조치사항

- 게시물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행정지도)
- 수질검사결과 위반사항 적발 업소는 행정처분

3 행정 사항

□ 법 개정사항 및 준수사항 업체 송부

□ 수영장 수질검사(의약과)

[붙임 1]

수영조 욕수 채수 및 운반요령

- 세균학적 검사용 채수: 멸균병 사용
 - 채 수 량 : 100mL용량 5병 이상
 - 채수지점 : 동일 수영장외 여러 장소에서 채수

- 이화학적 검사용 채수: 이물질 없는 깨끗한 용기 사용
 - 채 수 량 : 1ℓ용량 1병 이상
 - 채수지점 : 동일 수영장 바닥에서 수면으로 2/3지점에서 채취

- 채수시 주의사항
 - 멸균병 개봉시 수영장 수중에서 개봉하여 공기중의 낙하균 침투방지
 - 채수병 뚜껑 안쪽과 채수병 입구에 이물질이나 손이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욕수는 채수병에 여백이 없도록 꽉 채울 것

- 채수운반 : 4°C 이하 저온상태로 운반하여 즉시 의뢰

- 채수시 반드시 업주 입회하에 채수하여 검사 후 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보건소에서 채수병 제공

[붙임 2]

영업자 준수사항

수영장 입장 정원관리

- 수영장·주변 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수영장 정원기준 참고<(사)한국수영장업협회 자료>

1. 수영장내
 - 수심 1.5m 미만 : 수면 3㎡ 당 1인(독일 DIN 규정 4.5㎡)
 - 수심 1.5m 이상 : 수면 8.1㎡당 1인
2. 입장정원 : 실내 수영장은 풀내 정원의 20% 가산인원
 - 수영장 총면적이 옥외 풀내 면적의 3배 미만(풀내 인원의 50% 가산인원)
 - 수영장 총면적이 옥외 풀내 면적의 3배 이상(풀내 인원의 10% 가산인원)

수질관리

- 수영장 욕수 1일 3회이상 여과기 통과
- 수영장 욕수 수질기준 상시유지(중금속 항목 신설, 2015.06.23. 시행)

측정항목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비소(신설)	수은(신설)	알루미늄(신설)
변경 전	0.4~1.0mg/ℓ	5.8~8.6	2.8NTU 이하	12mg/ℓ이하	양성2개 이하	-	-	-
변경 후	0.4~1.0mg/ℓ	변동없음	1.5NTU 이하	변동없음	변동없음	0.05 mg/ℓ이하	0.007 mg/ℓ이하	0.5 mg/ℓ이하

□ 안전 및 위생관리

- 이용자 이용질서 유지
-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 제한
- 도약대의 수영제한 조치
 - 도약대의 전면돌출부의 최단부분에서 반지름 3m이내의 수면에 있어서 5인 이상 동시에 수영 금지조치
- 의료인(간호조무사급이상) 1인 이상 상시배치 (개장중인 실외수영장)
- 욕수의 조절·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1시간 마다 수영조 내의 수영자를 전부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
- 게시사항
 - 피난안내도, 수영장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 게시
- 관리요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
 - 미끄럼틀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 배치
 -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2명 이상 배치
-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시 구청 통보

□ 시설기준

- 공통기준(체육시설업)
 -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급수시설
 - 안전시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 준수
 - 관리시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 준수
 - 응급실 및 구호약품 비치
 - 적절한 환기시설

○ 개별기준(수영장업)

- 운동시설

- 수심은 0.9m 이상 2.7m 이하 ⇨ 수영장 벽면에 표시
- 물의 정화설비 : 순환여과방식

- 안전시설

- 수영장 전체 조망 감시탑 설치(일정 범위 이용자 제공의 경우 예외)

□ 체육지도자 배치

- 수영장 바닥면적 400㎡ 이하 실내 수영장 : 1명 이상
- 수영장 바닥면적 400㎡ 초과 실내 수영장 : 2명 이상